

## 서울고등법원

### 제 2 6 민 사 부

#### 판 결

|         |                                          |
|---------|------------------------------------------|
| 사건      | 2015나2046216 부당이득금                       |
| 원고,항소인  |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 피고,피항소인 | 1. B<br>2. D                             |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가합523808 판결 |
| 환송전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2035868 판결   |
| 환송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4202 판결       |
| 변론종결    | 2016. 1. 7.                              |
| 판결선고    | 2016. 1. 26.                             |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307,000,000원, 피고 D은 78,385,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4. 1. 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A의 회장이었던 E와 대표이사였던 F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여 부동산 개발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임직원의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거액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해 직접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3) A은 특수목적법인의 경영을 장악함으로써 사업이익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후, A의 직원들로 하여금 A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대출업무 및 특수목적법인 관리업무를 집행하도록 하면서 그들이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의 법인인감과 대출통장을 보관·관리하게 하였고, A의 대출금 중에서 차명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게 하였다.

4) A은 2006. 7. 경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인수한 다음, 2006. 7. 24. 피고 B를 대표이사로, A의 감사 K와 같은 동호회 회원인 제1심 공동피고 C를 이사로, K의 대학동창인 피고 D를 감사로 각 선임하여 취임등기를 마치고, G의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피고 B 명의로 21,000주를, 제1심 공동피고 C 명의로 21,000주를, 피고 D 명의로 18,000주를 각 취득하였다.

## 나. G의 피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

G는 피고들이 대표이사, 감사로 등재된 2006. 10.경부터 2011. 3.경까지 매월 월급으로 피고 B에게 5,000,000원 내지 6,000,000원을, 피고 D에게 1,000,000원 내지 1,600,000원을 지급하고, 부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B에게 합계 금 307,000,000원을, 피고 D에게 합계 금 78,385,000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다. 피고 D과 A 등의 이면합의

피고 D은 2011. 8. 18. A 등에 '본인은 G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실제 G의 경영 및 관리는 A 및 그 계열사인 저축은행에서 주관한다.

본인은 G에 대한 임원으로서 권한을 일체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동 권한 행사를 A 및 계열사인 저축은행에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임원 직무행사 위임 등에 대한 각서'와 '본인은 G의 주주로登記되어 있으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실제 G의 주주는 A 및 그 계열사인 저축은행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주권행사 위임 등에 대한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 라. G의 자산상태

G는 A에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3. 5. 16. 기준으로 39,338,192,009원에 이르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 13,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G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G에 대한 대출금채권자로서 위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무자력인 G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1)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데, 피고들은 이사 또는 감사로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라 할 수 있는 G의 주주총회의 이사 등 보수에 관한 결의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지급받은 급여 명목의 금원은 상법 제388조에 위배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은 G의 대표이사 내지 감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G와 민법 제680조에 따른 위임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G의 대표이사과 감사로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민법 제686조에 따른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3) 피고들은 A의 회장 E, 대표이사 F 등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행위 및 업무상 배임행위에 협력하는 방편으로 이 사건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명

의대여 약정은 A의 회장과 대표이사 등의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일 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382조 제1항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나. 손해배상청구

1) 피고들은 G의 대표이사과 감사로서 선관주의의무(민법 제681조, 상법 제382조 제2항, 제415조)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가 있는데도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G로 하여금 피고들에게 부당 지급된 급여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해태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A 임직원들이 특수목적법인의 명목상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이러한 배임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들은 G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던 A의 경영진들의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하여 G의 대표이사 내지 감사로서의 위임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함이 없이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주고 급여 명목의 보수를 지급받아 G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제760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다. 보수 감액 주장

이사, 감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그 이사, 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G는 A의 임, 직원들이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피고들은 명목상 대표이사, 감사에 불과하였고, G의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들이 받은 보수는 과도한 금원이어서 전액 반환되거나 감액되어야 한다.

###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G에 대하여 39,338,192,009원에 이르는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G는 현재 별다른 자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

권이 인정되고,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 1)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15조는 위 규정을 감사에 준용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서 정관에서 이사·감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감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이사·감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G의 정관에 대표이사 또는 감사인 피고들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그 보수액 등을 정하는 주주총회가 실제 개최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G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어, G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G는 A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100% 출자하여 만든 특수 목적법인으로서, A이 1인주주인 실질적인 1인회사이고 1인주주인 A의 결정에 따라 임원으로서의 보수를 받은 것이므로 임원인 피고들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은 G와 같은 특수목적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상호저축은행법을 회피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② A은 G에 대해서 그 인수과정을 주도하고 주식 인수자금을 제공하여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를 일제히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C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자본금 3억 원에 불과한 G에 약 390억에 이르는 막대한 대출금을 지원한 점, ③ A은 피고들을 G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보수액을 직접 정한 다음 2006. 10. 경부터 2011. 2.경 또는 2011. 3.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307,000,000원, 피고 D에게 합계 78,385,000원의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는 A 이 실질적으로 1인주 주인 1인회사로서 G의 경영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A이 좌우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G의 임원 들인 피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 및 그 보수액의 결정은 A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제 피고들의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위임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8,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의 주요 사업인 인천 연수구 L 일대 토지 매입과 등기 위임 및 환지에정지 지정 등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업무, 주식회사 M와의 공동사업약정, 서울보증보험과의 보험거래계약,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업무, 세무회계사무 소와의 자문용역계약, 공인회계사와의 외부감사 계약, 세무조사 대응 업무, 주식회사 에스알테크 사이의 분쟁에 관한 업무, 사무실 이전 업무 등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서류들에 G의 대표이사 자격 으로 피고 B의 기명 또는 일부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은 위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J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 등에 일부 참석하기도 한 사실, G의 이사회 회의록에 피고 D 이 G의 감사로서 해당 이사회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D이 2008. 11. 6.경 G 의 렌터카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고 2011. 3. 25.경에는 G에 사업운영비로 1,000 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D이 A에 임원 직무행사 위임 등에 대한 각서와 주주권행사 위임 등에 대한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비록 A이 G의 1인주주로서 실질적으로 G를 지배하면서 경영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였고, 피고들이 G의 대표이사 내지 감사로서 적극적으로 그 정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G의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서 상

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명의로 따른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들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A이 G의 실질적인 1인주주로서 피고들을 대표이사 내지 감사로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다르다거나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만으로 보수지급청구권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민법 제103조 위반이어서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G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 등에 참석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직책에 따른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를 수행함이 없이 단지 그 명의만을 대여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상 임원은 상법상 임원으로 등기됨에 따라 각종 회사 관련 서류작성 등의 부수업무의 처리가 필요하고, 상법상 임원으로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여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에 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G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직책에 따른 업무가 아니라 앞서 본 제한된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이 사법적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A 경영진이 특수목적법인을 운영한 데에는,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피고들이 A 경영진이 특수목적법인인 G를 설립한 목적 및 이를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경위, 업무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들과 G 사이의 이 사건 약정 당시 A 경영진의 위와 같은 동기가 표시되었다거나 피고들이 그 동기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1) 임원으로서의 임무 위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당사자들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G와 사이에 실제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G의 운영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G에 대한 관계에서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거나, 피고들이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권한 없이 받은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2) 횡령행위 등 임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가담 내지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와 감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G로서는 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점, G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은 특수목적법인인 G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G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를 맡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점, 피고들도 G의 주된 업무는 A측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지만 이사회결의에 참석하는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해왔던 점,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피고들이 G의 실질적인 1인주주인 A에 의하여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이상, 법률상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G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거나 그 보수 지급이 G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횡령 내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주장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 F 등 A의 경영진들이 G를 설립하고 A으로 하여금 G에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불법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불법대출은 A의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들이 G에 대한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G의 임원이 되어 보수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보수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이사·감사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그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보수청구권의 제한 여부와 그 제한 범위는,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가 제공하는 급부의 내용 또는 직무수행의 정도, 지급받는 보수의 액수와 회사의 재무상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 등의 보수와의 차이,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를 선임한 목적과 그 선임 및 자격 유지의 필요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A으로서의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피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G의 설립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G의 명목상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사람으로서 피고들이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을 G의 대표이사 내지 감사로 선임하면서 G의 주된 경영 판단과 의사결정은 A이 하였고 피고들로 하여금 그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였던 사실, 피고 B은 G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G의 감사로서 각 선임되어 그 등기를 마치고, 2006.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G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피고 B은 합계 307,000,000원을, 피고 D은 합계 78,385,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피고들은 G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서 각 등기된 기간

동안 대표이사 내지 감사 명의를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들의 대표이사 내지 감사로서의 직무수행의 정도, 지급받은 보수의 액수, A에서 피고들을 대표이사 내지 감사로 선임한 목적과 그 선임 및 자격 유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들이 지급받은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백승엽 정준화